

수원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가단503494(본소), 2022가단51111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중도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재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2. 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5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2. 3.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8,0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6. 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조달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58,014,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요강]

계약건명

전자조달시스템 개발

계약금액

일금 131,850,000원, 부가세 별도

대금결제방법

지급조건에 따른 현금 지급(제4조 참조)

계약기간

2021. 6. 8.부터 2021. 12. 31.

제1조 [계약내용]

- ① 원고는 피고에게 시스템 전체 개발 및 디자인을 의뢰한다.
- ② 피고는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성실히 제작에 임한다.
- ③ 원고는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기반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제2조 [용역의 종류 및 범위]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웹페이지 및 모바일(안드로이드 버전에 한함) 제작에 한한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작업범위 : 국문 시스템 제작 PC버전

국문 시스템 제작 모바일 버전(안드로이드에 한함)

제3조 [제작기간]

① 시스템 개발기간은 원고와 피고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고 피고가 제작일정표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전달한 뒤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② 원고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반자료를 지연제공 시, 계약기간은 추후 협의 하에 연장될 수 있다.

③ 계약목적물 외 시스템 메뉴 항목 및 추가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제4조 [작업진행 및 대금지급]

① 본 계약의 대금지급(부가세 별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금 52,7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39,55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39,55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3조 제1항에 따른 제작일정표를 원고와 논의하여 정한 뒤 서면으로 전달한다.

③ 피고는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제작일정에 따라 1차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고는 즉시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제작일정에 따라 최종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고는 즉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C로부터 구매한 솔루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차 산출물을 제작한 후 2021. 10. 18.

원고와 회의하면서 시연 및 제공하였고, 2021. 12. 14.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2021. 12.

31.까지 중도금 39,555,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출시된 솔루션 프로그램이 아닌 자체 제작한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피고에게 개발을 의뢰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원고와 이 사건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지 아니한 채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하려 하였고, 개발일정표와 달리 1차 산출물을 제작시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착수금 58,014,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이는 피고의 사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개발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기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43,51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기로 이 사건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위 각 증거들과 갑 제2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개발계약의 체결에 피고의 사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회사 대표이사 F은 2021. 4. 12. 피고에게 ‘입찰업체의 검증방법, 서류접수 방법 및 위변조 방지 대책, DDOS등으로 입찰을 방해할 경우를 대비한 보안장치, 전자결재시스템, 입찰제한업체 참여 제안방법 및 정책, 입찰평가시스템, 동시 접속 및 입찰참여 업체 수, 입찰참여 보증액 및 담보설정, 입찰이행보증보험 등의 구성방법, 입찰정보 제공업체를 통한 입찰공고 배포전략, 입찰정보업체 관리 및 필터링 기능,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법, 운영을 위한 관리자 시스템의 요구사항, 반응형 및 웹표준의 범위, 웹과 앱의 연계방안, SMS/전자FAX 등의 외부모듈과의 연계, API 및 외부 DB의 변환과 추후 업데이트를 대비한 구성’, ‘학교장터 같은 것을 제작하려면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보냅니다. 당사가 제작하고자 하는 사이트는 학교장터와 유사하게 하고 싶으며 상호는 아파트장터가 될 것입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제작하고 싶다는 취지로 보일 뿐 나아가 이를 개발함에 있어 기존의 솔루션 프로그램을 구입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개발계약서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을 ‘전자조달시스템 웹페이지 및 모바일(안드로이드 버전에 한함)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디자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개발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개발일정표와 견적서에 ‘기획/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PG 개발/서버개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솔루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를 기획설계하고, PG(일반적으로 Payment Gateway, 즉 결제 수단과 연동하여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말한다)와 서버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기존 솔루션 프로그램과 의뢰인이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의 차이를 분석하여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④ 피고의 개발일정표에 ‘솔루션 사전점검 및 테스트, 솔루션 설치,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항목이나 활용하고자 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개발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 솔루션 프로그램을 일체 활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의 1차 산출물과 C의 솔루션 프로그램에 유사한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1차적인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개발한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니며, 실제로 피고는 2021. 10. 18. 원고와 회의 후 2021. 10.

23.경까지 당초 시연 및 제공한 1차 산출물을 수정추가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

⑥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기존 솔루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기간이 2주에 불과하다거나 훨씬 저렴한 가격에 개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대금을 협의하여 정한 이상 그 대금이 다소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계약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원고의 중도금 지급 의무

피고가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차 산출물을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43,510,500원(= 39,555,000원 + 3,9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22.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